

실험실 창업 안내 자료

1. 실험실 창업이란?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기관의 실험실 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소속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그 자신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12월 30일 정부(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창업제도"를 도입하였다.

실험실창업제도의 실질적인 법적근거 마련으로 인하여, 지식기반을 갖춘 젊은세대와 교수·연구원의 창업자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었고, 박사급 고급인력의 90% 이상이 근무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은 겸직을 통하여 그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그 뜻하는 바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2. 실험실 창업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가. 교수·연구원 겸직제도(법 제16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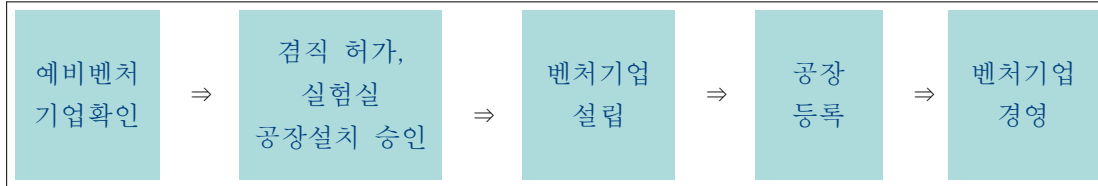
교수 및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의 겸직할 수 있음

나. 실험실공장제도(법 제18조의2)

교수·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실험실공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을 할 수 있음

3. 업종별 실험실 창업절차도

가. 제조업 실험실 창업 절차



1) 벤처기업 평가(기술평가) 신청 및 예비벤처기업 확인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교수·연구원은 벤처확인·공시시스템 (<http://www.venturein.or.kr>)에 벤처기업 평가를 신청하여 사업성 또는 기술성을 평가 받아야 함
 평가 결과 사업성 또는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교수·연구원은 해당 기관에서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교부받음

2) 검직허가 신청 및 허가
 교수·연구원은 [벤처기업 대표자 검직허가 신청서]를 교무과에 제출하여 총장(소속 기관의 장)의 검직 허가를 받아야 함

3) 실험실공장 설치 신청 및 승인
 교수·연구원은 총장(소속 기관의 장)에게 실험실공장 설치 및 사용을 위해 다음의 자료를 해양벤처진흥센터로 제출하여 총장(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실험실 공장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함

- ※ 첨부자료
- ① 실험실 공장 설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② 교육공무원 검직 허가서(총장 승인)
 - ③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④ 교육공무원 검직허가 학부(과) 동의서
 - ⑤ 교육시설 용도추가 관련 확인서
 - ⑥ 실험실공장설치 동의요청서(학부(과))
 - ⑦ 제조시설 배치도

4) 기업설립 및 실험실공장 설치
 제조업종이 인·허가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에, 개인기업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실험실내에는 그 제조시설을 설치함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또는 법인설립신고)시에 주소지를 실험실로 함

5) 벤처기업 확인 및 공장등록 신청
 기업설립후 예비 벤처기업 확인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 공장등록신청서에 "실험실공장설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시·군·구에 공장등록을 함

나. S/W 및 비제조업 실험실 창업 절차



1) 벤처기업 평가(기술평가) 신청 및 예비벤처기업 확인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교수·연구원은 벤처확인·공시시스템

(<http://www.venturein.or.kr>)에 벤처기업 평가를 신청하여 사업성 또는 기술성을 평가 받아야 함

평가 결과 사업성 또는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교수·연구원은 해당 기관에서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교부받음

2) 겸직허가 신청 및 허가

교수·연구원은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 신청서]를 교무과에 제출하여 총장(소속 기관의 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3) 실험실 사용 승인 신청 및 승인

교수·연구원은 총장(소속 기관의 장)에게 실험실의 사용을 위해 다음의 자료를 해양벤처진흥센터로 제출하여 총장(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실험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함

※ 첨부자료

- ① 실험실 사용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② 겸직 허가서(총장)
- ③ 겸직허가 학부(과) 동의서
- ④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⑤ 교육시설 용도추가 관련 확인서
- ⑥ 실험실 사용 동의요청서(학부(과))

4) 기업설립 및 사무실 설치

업종이 인·허가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에, 개인기업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실험실내에는 사무실을 설치함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또는 법인설립신고)시에 주소지를 실험실로 함

5) 벤처기업 확인 신청

기업설립 후 예비 벤처기업 확인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음

[참고 자료]

1. 실험실창업 : 교수 또는 연구원의 벤처창업을 촉진하기위하여 대학·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실험실공장 설치 및 공장등록 허용

2. 실험실공장 설치자

- 가.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연구원 포함)
- 나. 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포함)의 연구원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 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 마.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 포함)의 연구원

3. 실험실공장 설치 가능한 장소

- 가.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실험실
- 나.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실험실
- 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실험실
- 라.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하여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실험실

4. 실험실공장 개요

- 가. 정의 :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
- 나. 설치규모 :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약 150평)를 초과할 수 없음
- 다. 입주대상 : 수질, 소음, 공해등이 적은 도시형공장
- 라. 총 규 모 : 대학(연구기관)의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은 당해 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5. 실험실공장 설치 및 공장등록 절차

가. 제조업

벤처기업확인서(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 경직 허가 및 실험실공장설치 승인 -> 실험실내에 주소를 두는 법인을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실험실내에 제조시설 설치) -> 실험실공장 설치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서에 실험실 공장 설치 승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공장등록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비제조업 또는 S/W업종

벤처기업확인서(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 경직허가 및 실험실 사용 승인 -> (업종이 인허가 사항인 경우 인허가를 받은 후)실험실내에 주소를 두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 등록

* 실험실내에 주소를 두는 사업자등록신청(신청기관 : 관할지방세무서)시 대학의 장(연구기관의 장)의 실험실사용승인서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짐